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8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이용호·김상훈·김윤덕

서범수 · 안호영 · 양정숙

이용빈 · 정성호 · 정춘숙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음.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하고,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 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함. 그 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 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 강료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 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 ① 병무청장은 3대(代)의모든 남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의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없고 1명 이상의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

-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자.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었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 인 자
- 3.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거나 6·25전 쟁에 참전하여 군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선정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생 <u><신 설></u>	제82조의2(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 ① 병무청장은 3대 (代)의 모든 남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신청에 의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1명이상의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마친 경우를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입영하여현역으로 복무를마친 자.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전상·공상으로의무복무기간을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자

- 3.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거나 6·25전쟁에 참전하여 군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 명문가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선정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